

카페, 편의점 운영 근로자 채용 공고

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카페(북다방), 편의점 운영 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2월 4일

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



1. 모집인원 및 자격기준

가. 아래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

영역	채용인원	자격요건	우대조건
카페, 편의점 통합 운영	00명	• 커피 및 음료 제조 가능자 • 편의점 물품 판매 가능자 (발주, 진열, 재고관리 등 전반)	1. 카페 근무경력이 있는 자 2.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3. 편의점 근무경력이 있는 자

나. 응시자격

- 응시연령 : 제한없음
- 성 별 : 제한없음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준용하며,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

다. 근무분야 : 커피·음료 제조·판매, 편의점 운영 등

2. 채용기간 : 2025.2.17. ~ 2026.1.24.(수습 기간 2개월 포함, 급여는 동일)

※ 기존 직원과 계약기간을 맞추려는 것으로,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정한 역량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

3. 근무조건

가. 보 수 : 시간당 10,030원(세전)

나. 근무시간 : 09:00~18:00, 주5일, 주당 40시간

※ 보수 및 근무시간은 별도 카페·편의점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 4대보험 가입

4. 전형방법

가. 1차 :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,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의 선별기준에 의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, 5배수 미만으로 서류 전형합격자를 결정함
 - 다득점순위로 선발하되,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선발

나. 2차 : 면접시험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
-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면접

※ 응시인원에 따라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합운영 가능

5. 시험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공고기간	2025.2.4.(화) ~ 2025.2.10.(월)	
서류접수기간	2025.2.5.(수) 09:00 ~ 2.10.(월) 18:00	☐ 접수방법 : e-mail(parksy333@korea.kr) 접수 또는 직접제출 ☐ 접수처 :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, 306호 ☐ 문의전화 : 054-880-4791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5.2.11.(화) (예정)	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(면접대상자, 면접장소, 면접시간)
면접시험 (2차)	2025.2.12.(수) (예정)	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
최종합격자 발표	2025.2.13.(목) (예정)	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(공지 및 개별통보)

※ 제반상황에 따라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.

6. 제출서류

가. 이력서 1부

나. 자기소개서 1부

다. 직무수행계획서 1부.

라. 우대 자격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
7. 기타사항

- 가. 지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수와 같거나,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.
- 나.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제한에 해당 될 때에는 응시를 제한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고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- 다.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름.
- 라. 제출서류 기재내용의 미비,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,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가 감수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처리는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름.
- 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(054-880-4791) 문의

※ 응시자격 제한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